

『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10월 28일

나. 발 의 자 : 양진오, 강승수, 권기만, 김근아, 김복자
김태근, 박세진, 손홍섭, 안주찬, 윤종호
정하영, 허 복(12인)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1월 05일
제9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양진오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 노인회 구미시 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자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명시(안 제4조의2)
-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·반영(안 제4조의3)
-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후 평가하고, 평가 결과를 4년마다 구미시 의회에 보고.(안 제4조의4 ~ 제4조의6)

- 노인 복지에 관련한 지원 시책 마련(안 제4조의7)
-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 자문·심의를 위해 노인복지정책 위원회의 설치(안 제4조의8)
-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4조의9 ~ 제4조의13)

라. 참고사항

-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엽

○ 본 조례안은

-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노인 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대안을 강구하고자 구미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대한노인회 구미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명시(안 제4조의 2)
-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수립·반영 (안 제4조의3~제4조의 7)
-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(안 제4조의 8)등을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▪ 본 조례안은

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범위 안에서 노인지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위해 노인 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
-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